

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안내

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일정을 안내드리니
일정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휴학 신청기간 : 2026. 8. 5.(수) 09:00 ~ 8. 7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휴학 신청
- 휴학연한: 4학기(2년)까지 일반휴학 가능(1회 신청 시 1학기 휴학)

※ 휴학 신청 횟수는 2025학년도 휴학 신청부터 적용

2024학년도 2학기까지 신청한 일반휴학 횟수는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5학년도 휴학 신청부터 적용

□ 휴학종류

- 일반휴학: 질병, 개인사정 및 가정사정 등
- 군휴학: 병역 의무복무 및 연장복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
-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: 자녀 1인당 2개 학기

※ 군휴학 및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으며, 신청 사유별 증빙 서류 제출 필수

□ 휴학 관련 등록금 납부 안내
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, **개강전에 "휴학신청" 필수**
- 학기개시일(2026.09.01.)부터 10일(2026.09.10.)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가능
- 다만,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장학금 사항은 「대학원 장학규정」 제11조(장학금 지급중단) 의거 **지급 중단됨**(대학원 장학규정 참조)

□ 재학 중 일반휴학 신청자의 복학 시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

- 「등록금 운영규정」 제6조(등록금 반환기준) 참조
- 재학 중 일반휴학 한 대상자는 재학한 기간 동안의 수업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※ 휴학 시 등록금 반환가능 / 제적(자퇴) 시 등록금(장학금 자동회수) 반환됨

※ 단, 학기개시일 ~ 30일에 휴학 후 자퇴 및 제적의 경우 등록금 1/6 차감될 수 있음

※ 「등록금 운영규정」 제6조(등록금 반환기준) 해당 / 반환 안내 참고

학기 개시일(개강일)로부터 경과일	복학 시 추가 등록금 납부금액
학기 개시일 전	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(100% 인정)
학기 개시일 ~ 30일까지	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 31일 ~ 60일까지	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 61일 ~ 90일까지	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 91일 이후	등록금 전액

※ 재학한 기준 기간에 따라 휴학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이 차감되고 **차감된 금액의 잔액은 복학공제금으로 유지됨**

※ 복학공제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,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함

예시	- 학기 등록금(수업료) 총액 : ₩ 4,700,000(석사 기준) - 학기 재학 중 휴학신청일 : 학기개시일 ~ 30일 해당 - 등록금(수업료 차감액 / 추가납부금) : ₩783,333(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) - 복학 시 인정되는 복학공제금 : ₩3,916,667원(₩4,700,000 - ₩783,333) - 복학 시 최종 납부 등록금 : 복학공제금(인정) + 차감된 등록금(추가납부금) - ₩3,916,667 + ₩783,333(추가납부금) = ₩4,700,000
-----------	--

□ 등록금 납부 후(휴학 포함) 자퇴 및 제적(미복학)의 경우 등록금 반환 안내

※ 「등록금 운영규정」 제6조(등록금 반환기준) 해당 / 반환 안내 참고

학기 개시일(개강일)로부터 경과일	등록금 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전	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에서 ~ 30일까지	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	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	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	

※ 등록금 반환기준은 장학금이 포함된 실 납부금액이 아님

※ 「대학원 장학규정」 제11조(장학금 지급중단) 참조

예시	- 학기 등록금(수업료) 총액 : ₩4,700,000(석사 기준) - 학기 장학금 수혜금액 : ₩2,350,000(선 감면 50%) - 실 납부액 : ₩2,350,000 - 자퇴(제적)일 :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에 해당(6분의 5 해당액) - 반환금액 : 반환기준액(6분의 5 해당액) - 교내장학금(자동회수) - ₩3,916,667(4,700,000 6분의 5 해당액) - ₩2,350,000 = ₩1,566,667(반환금액)
-----------	---